

임금피크제지원금 부당이득금(초과지급분) 회수결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민원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,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임금피크제 지원금 회수결정 사전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.

2022. 2. 8.

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평 택 지 청



1. 건 명 : 임금피크제지원금 부당이득금(초과지급분) 회수결정 사전통지
2. 근 거 :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불임-공시송달자 명단 참조
4. 공고기간: 2022. 2. 8. ~ 2. 22.(15일간)
5. 의견제출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평택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(F.0508-8230-0570)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6. 기타사항은 평택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이혁재(전화 031-646-126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불임]

임금피크제지원금 부당이득금(초과지급분) 회수결정 사전통지 공시송달 명단

(공고기간 : 2021. 2. 8. ~ 2. 22.)

연번	대상자명	주민등록번호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
					지원금액	회수금액	회수사유	
1	조*구	6109**-*****	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건산1길 3-5, 3동 407호(청도아파트)	임금피크제지원금 부당이득금(초과지 급분) 회수결정 사전통지	2,450,360원	1,426,770원	2019년 임금피크제지원금 정산결과 초과지급분 발생	폐문부재(2회) 2022.1.24., 2022.2.7.